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년 11월 08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8(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임)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11.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1.18(월)	2024.11.19(화)	2024.11.20(수)	2024.11.26(화)	2024.11.29(금)~ 2024.12.07(토)	2024.12.08(일)~ 2024.12.12(목)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PC·모바일) 청약홈	• 견본주택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557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하나(단, 은행 영업정일 업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자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과- 31401호(2024.11.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도안2-2지구 SA1B1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층 6개동 총 443세대 중 일반분양 393세대 및 부대관리시설  
 [특별공급 144세대(절거주택 50세대, 기관추천 14세대, 다자녀가구 37세대, 신혼부부 23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11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7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단위: m,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절거 주택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 000655	01	084.9923A	84A	84.9923	24.3569	109.3492	66.4097	175.7589	50.1497	112	11	50	11	20	3	10	105	7	6
	02	084.9610B	84B	84.9610	24.9197	109.8807	66.3855	176.2662	50.1313	20	3	-	2	3	-	1	9	11	1
	03	101.9822A	101A	101.9822	28.2955	130.2777	79.6850	209.9627	60.1746	138	-	-	13	-	4	-	17	121	6
	04	101.9887B	101B	101.9887	29.8312	131.8199	79.6901	211.5100	60.1785	28	-	-	2	-	-	-	2	26	1
	05	120.8892A	120A	120.8892	34.2410	155.1302	94.4581	249.5883	71.3307	52	-	5	-	1	-	6	46	4	3
	06	120.9594B	120B	120.9594	33.7221	154.6815	94.5131	249.1946	71.3722	40	-	4	-	1	-	5	35	3	0
	07	199.6692P	199P	199.6692	57.4196	257.0888	156.0137	413.1025	117.8151	2	-	-	-	-	-	-	2	0	0
	08	240.2103P	240P	240.2103	72.8208	313.0311	187.6908	500.7219	141.7365	1	-	-	-	-	-	-	1	0	0
				합계						393	14	50	37	23	9	11	144	249	21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 x 0.3025 또는 공급면적(m) = 3.3058  
 -상기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생활지원센터,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은 인허가 과정, 단수 정리, 공부 정리,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결과 결과 등으로 인해 병행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조정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 합니다.  
 -세대별 대지비분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비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홈페이지는 타입(약식표기)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급세대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에별 점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923A	084.9610B	101.9822A	101.9887B	120.8892A	120.9594B	199.6692P	240.2103P
약식표기	84A	84B	101A	101B	120A	120B	199P	240P

## II 특별공급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신고일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등은 제외하며,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거주택 소유자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절거민은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III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IV 기타 주요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4-101-0006500 호	252,389,97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통등기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등록시 포함)까지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한일이앤씨건축사무소	(주)21세기이앤씨	(주)한코코아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이앤씨
금액	2,391,425,000	526,648,447	76,108,364	247,000,0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상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유로개발2차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빌딩사옥)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95, 402호 (봉명동, 가온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41884		160111-0474918

## ■ 견본주택 안내

구분	내용												
견본주택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557번지												
운영기간	2024년 11월 08일부터~ 분양완료 시까지												
주요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특별공급</th> <th>1순위</th> <th>2순위</th> <th>당첨자발표</th> <th>서류접수기간</th> <th>계약기간</th> </tr> </thead> <tbody> <tr> <td>2024.11.18(월) 09:00~17:30</td> <td>2024.11.19(화) 09:00~17:30</td> <td>2024.11.20(수) 09:00~17:30</td> <td>2024.11.26(화)</td> <td>2024.11.29(금) ~ 2024.12.07(토)</td> <td>2024.12.08(일) ~ 2024.12.12(목)</td> </tr> </tbody> </table>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기간	계약기간	2024.11.18(월) 09:00~17:30	2024.11.19(화) 09:00~17:30	2024.11.20(수) 09:00~17:30	2024.11.26(화)	2024.11.29(금) ~ 2024.12.07(토)	2024.12.08(일) ~ 2024.12.12(목)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기간	계약기간								
2024.11.18(월) 09:00~17:30	2024.11.19(화) 09:00~17:30	2024.11.20(수) 09:00~17:30	2024.11.26(화)	2024.11.29(금) ~ 2024.12.07(토)	2024.12.08(일) ~ 2024.12.12(목)								
사이버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https://doan-riverpark.com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사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련부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의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 결과 타임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인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인세는 시행위탁사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공동 납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서 또는 이후 별도의 계약 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후는 건물 동별, 해당 타입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준공인가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의 이유로 실질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시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반납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분(공공임차),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정시설을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종류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II 특별공급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신고일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등은 제외하며,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거주택 소유자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절거민은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III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IV 기타 주요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4-101-0006500 호	252,389,97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통등기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등록시 포함)까지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한일이앤씨건축사무소	(주)21세기이앤씨	(주)한코코아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이앤씨
금액	2,391,425,000	526,648,44		